

영국사례

**자살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영국 PCC는 '전기쇼크자살'이란 헤드라인으로 Wigan Evening Post지가 2007년 5월 25일 발행한 기사가 자살에 관한 지나친 세부묘사를 해 PCC 윤리강령 제5항(슬픔과 충격에 관한 침입)을 어겼다고 한 여성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기사는 지역 선생님이었던 불만신청인 남편의 자살에 관한 조사를 보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그 기사가 남편이 어떻게 자살을 했는가에 관한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불만신청인의 죽은 남편이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igan Evening Post지는 해당 기사가 관련 사건을 정확히 보도한 것이라 말하고, 다만 기사에 자살 방법에 관하여

너무 많은 세부사항을 포함시켰음을 인정하고 불만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PCC 윤리강령 제5항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사용된 자살 방법에 관한 지나친 세부사항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에 새로 개정되었다. 이 조항은 모방 자살의 위

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PCC는 신문사들이 자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묘사하면서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PCC는 자살 사건에 관한 조사는 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신문사들은 그 조사의 진행 상황 등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PCC는 신문사들이 PCC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자살 방법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피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PCC는 자살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표현을 할 경우 자살에 관한 지나치게 세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 □

호주사례 1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언론평의회는 David Bruckner가 2007년 6월 23일과 24일자에 발행된 기사와 관련해 The Courier-Mail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에 대해 이를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기사는 Queensland 건강당국이 '최신 유행하고 있는 Gaji

주스를 마신 후 간 중독으로 사망한 여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기사는 “의사들이 현 시점에서는 여러 테스트들이 Goji 주스가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 주스가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여자의 사망이 새로운 건강 경향과 관련됐다는 언급을 담은 포인터를 몇 개의 Goji 딸기 사진과 나란히 14면에 게재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에 나온 포인터와 비난조의 헤드라인 그리고 Goji 주스와 딸기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기사 내용이 불만신청인의 회사 사업에 심각한 영

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주언론평의회는 Goji 주스와 딸기에 대한 편견 있는 주장이 기사의 내용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호주언론평의회는 The Courier-Mail지가 문제의 사건이 공공의 건강 문제와 관련 있으므로 한 달 간 Goji 주스를 마시고 간 중독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호주언론평의회는 14면의 포인터에 좀 더 신중한 단어를 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의 포인터는 어떤 관련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모호했다고 판단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

이에 대해 Canberra Times지는 다른 호주 신문사들처럼 토착원주민 아이들의 일반적인 사진들을 연방 중재에 관한 기사와 더불어 게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Canberra Times지는 또한 불만신청이 제기된 사진은 토착원주민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집을 보여주었고 사진에 등장한 여자 아이는 부모의 사전 동의 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Sydney Morning Herald지 역시 사진 게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들은 Sydney Morning Herald지를 초청한 북부의 두 지역사회의 풍경과 관련 있었다. 두 지역사회는 그 사진들이 북부의 토착원주민 지역사회들만의 특수한 문제점을 언급하는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호주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진심 어린 걱정은 인정하지만 문제의 사진들의 발행이 그 아이들이 학대받은 적이 있음을 가리킨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호주언론평의회는 신문과 잡지가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알릴 의무와 그 문제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할 권리를 가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호주언론평의회는 신문과 잡지는 잘못된 추론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에 아이들을 포함시킬 때는 각별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

호주사례 2

언론은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를 알릴 의무와 그 문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할 권리를 갖는다

호주언론평의회는 Frances Killey가 Canberra Times와 Sydney Morning Herald가 지난 6월 22일에 게재한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두 신문의 6월 22일자 각 일면 및 다른 면에 등장한 토착원주민과 아이들의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들이 등장한 문제의 사진은 북부 지역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에 관한 연설

을 하려는 수상의 계획을 보도하면서 함께 게재됐다. 불만신청인은 사진에 등장한 아이들의 사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제시됐고 아이들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학대당했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신문사들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호주언론평의회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